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대구 수성구 노변동 742번지
- 공급대상 : 총 688세대

공급유형	주택 타입	공급 세대수	세대당 주택면적(m ²)						입주예정
			공 급 면 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계		688	-						'21.3월
공공임대 (10년)	소계	106	-						
	49A	63	68.4024	49.9966	18.4058	5.6268	36.9818	111.0110	
	49B	43	68.5681	49.9708	18.5973	5.6239	36.9627	111.1547	
공공분양	소계	582	-						
	59A	216	79.4628	59.9949	19.4679	6.7521	44.3775	130.5924	
	59B	122	79.6650	59.9460	19.7190	6.7465	44.3413	130.7528	
	84A	220	111.2710	84.9520	26.3190	9.5608	62.8379	183.6697	
	84B	24	111.0311	84.9789	26.0522	9.5639	62.8578	183.4528	

※ 각 기관별 배정물량 별도 안내(공문 참고)

- 공급가격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게시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내 용
입주자모집공고	2018. 8. 21(화)	일간신문, 공사 홈페이지
청약신청	2018. 8. 27(월)	인터넷 청약 접수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불가) * 노약자등 부득이하게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방문 접수 가능

※ 위 공급일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우리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자격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8. 21 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한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필요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복무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무원,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아래의 사람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⑤ 위④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7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나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제14호에 해당하는 자(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함

■ 추천순번 부여 시 검토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64호 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추천 대상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 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Ⅲ 예비입주자 추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0%)까지 선정하므로, 기관별 예비입주자 배정물량(공문 참고)만큼 추천이 가능합니다.
- 단, 기관추천 예비입주자는 타 특별공급 유형(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신청자 중 당첨이 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잔여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기관추천 예비입주자 포함)중에서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의 청약 접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물량이 해당 기관추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예비입주자로 추천된 분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확정됩니다.

IV

기타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아파트투유, www.ap2you.com)을 통해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하며 대상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에 따른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양가격, 임대조건, 납부방법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과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팜플렛, 주택전시관 방문을 통하여 공급신청자께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어** 제반 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주택전시관에서 배포하며, 주택전시관 개관일은 공고문 참조)
- 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 동·호수 등 단지배치도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제공되는 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